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60
----------	-------

발의연월일 : 2025. 8. 13.

발 의 자 : 한정애 · 문진석 · 박홍근
임오경 · 이학영 · 김 윤
양문석 · 조인철 · 이병진
김성희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강도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재난경보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의 송출 방식, 사용 단말기, 정보 포맷 등이 제각각임.

미국의 통합공공경보 · 경고시스템(IPWS)나 일본의 전국상시경보시스템(J-ALERT)처럼 선진국들은 법률에 근거한 중앙통합형 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난경보를 표준화하고 모든 전송 매체(휴대폰, 방송, 라디오 등)를 일괄 연계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도록 의무화하

여 이를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 대응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5항 및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5항 및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9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중 “제7항과 제8항을”을 “제9항과 제10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2항) 중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 운영, 제5항”으로,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2027년 1월 31일까지 기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표준체계에 맞는 시설로 전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u><신 설></u>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에 따라야 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 ----- ----- ----- ----- -----.
<u><후단 신설></u>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에 따라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⑥ 제5항에-----

예보·경보·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생략)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군·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제

-----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에-----

-----제5항 및 제6항에-----
-----.

⑧ -----

-----제5항 및 제6항에-----

-----.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⑩ -----제9항에-----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시·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u>⑨</u> · <u>⑩</u> (생략) <u>⑪</u>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제7항과 제8항</u>을 준용한다. <u>⑫</u> <u>제3항</u> 및 <u>제4항</u>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u>⑪</u> · <u>⑫</u> (현행 제9항 및 제10항과 같음) <u>⑬</u> ----- ----- ----- ----- -----<u>제9항과 제10항</u>을-----. <u>⑭</u> <u>제1항</u>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표준체계 운영, <u>제5항</u>---<u>제6항</u>에----- ----- -----
--	--